

# 예산총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284,202,861	98,526,086
일반회계	2,853,386,376	85,601,591
특별회계	430,816,485	12,924,495
공기업특별회계	354,045,704	10,621,37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8,683,423	4,760,50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5,362,281	5,860,868
기타특별회계	76,770,781	2,303,123
교통사업 특별회계	30,091,241	902,737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67,600	38,028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169,925	5,098
수질개선 특별회계	22,788,725	683,662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180,530	35,416
균형발전특별회계	20,066,860	602,00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205,900	36,17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088,789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60,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